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조태옥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소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B동 1701호(서초동, 부띠끄모나코)

담당변호사 신인수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대표이사 김영섭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1. 주주권 침해

2. 대표이사 피선출권 침해

3.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 가. 채무자의 2025. 11. 4.자 이사회결의 중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 신설,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 개시 및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 결정에 관한 부분,
 - 나. 채무자의 2025. 12. 16.자 이사회결의 중 대표이사후보의 확정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지위 및 신청의 요지

가.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신 기업이고(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채권자는 주주이자 채무자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지원자입니다(소갑 제2호증 지원서, 소갑 제3호증 방문접수 확인증).

나. 이 사건 신청의 요지

채무자 사외이사 조승아는 2024년 3월 26일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습니다(소갑 제4호증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그럼에도 조승아는 자격상실 이후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참석하여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신청취지 제1항 기재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권한 없는 자가 참여한 이사회결의로서 위법·무효입니다.

한편 조승아는 유일한 여성 이사였습니다. 조승아가 2024년 3월 26일 자격 상실로 당연퇴임한 이후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규정)을 위반하여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법·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주주이자 차기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절차에 지원한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위법함이 명백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2024년 3월 26일 사외이사 조승아의 자격상실

채무자는 2025년 12월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소갑 제4호증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2024년 3월 26일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임했다는 뒤늦은 공고였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위원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아는 2024년 3월 26일 채무자의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중복 선임되어 채무자의 사외이사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소갑 제5호증 조선일보 기사).

문제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2024년 3월 26일 자격상실로 당연퇴임 이후에도 계속 이사회에 참여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고, 이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나. 2025년 11월 4일자 채무자 이사회결의

채무자 이사회는 2025년 11월 4일 ①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 부문장급 경영임원, 법무실장에 대한 임명 및 면직, ▲ 주요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을 받도록 하고 (소갑 제6호증 이사회규정 제8조 제3항, 소갑 제7호증 노컷뉴스 기사), ②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 개시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기준을 결정하여 대표이사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소갑 제8호증 KT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 소갑 제9호증 천지일보 기사].

조승아는 2024년 3월 26일자로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퇴임했으므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위 이사회결의에 참석해 심의·의결했습니다.

다. 2025년 12월 16일자 채무자 이사회결의

채무자 이사회는 2025년 12월 16일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을 확정했습니다(소갑 제10호증 조선비즈 기사).

조승아는 위 이사회결의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 33명의 후보자 중에서 3인의 최종 후보로 압축,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소갑 제11호증의 1, 2, 3 각 채무자 보도자료, 소갑 제12호증 더팩트 기사, 소갑 제13호증 중앙일보 기사).

3.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쟁점과 관련 법리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 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체적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위법·무효사유가 있는지,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바, 이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위반 : 권한 없는 자의 이사회결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의 가목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위원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승아는 2024년 3월 26일 채무자의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중복 선임되어 채무자의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사외이사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2025년 11월 4일자 이사회결의 및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

참여해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대표이사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33명의 후보자를 3명의 최종 후보로 압축한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그 하자는 2025년 12 월 16일자 이사회결의에서 박윤영을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확정한 부분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인 상법 제548조의8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가 이사로 참여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법·무효임이 명백합니다.

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위반 : 특정 (性)의 이사로만 이사회 구성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 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상 평등권과 남녀평등 원칙,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채무자 이사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여성은 조승아 사외이사가 유일했습니다(소갑 제14호증 이사회 구성원). 그런데 유일한 여성 이사 조승아가 2024년 3월 26일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퇴임했으므로 그 이후 채무자 이사회는 오직 남성으로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법·무효임이 명백합니다.

라. 채권자의 주주권, 대표이사 피선출권,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첫째, 채권자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이사회 참여, 이 사회구성의 하자로 말미암아 채무자 회사의 사업운영과 신뢰도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주주로서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받을 권리 및 대표이사 피선출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모 절차에 지원한 차기 대표이사 후보 33인 중 1인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하고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소갑 제2호증 지원서, 소갑 제3호증 방문접수 확인증). 그러나 권한 없는 조승아가 이사회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대표이사 피선출권이 침해 당했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직접 이해당사자입니다.

셋째, 채권자의 개인정보보호권도 침해되었습니다. 권한 없는 조승아가 채권자가 제출한 지원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함부로 열람, 검토함으로써 채권자의 개인정보보호권도 침해되었습니다.

마. 소 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자

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위법·무효이고, 채권자는 주주이자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이해관계인이므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가. 앞서 본 것처럼 채무자 이사회는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그 구성 자체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현재의 위법한 이사회를 그대로 유지한 채 회사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신뢰도는 물론, 거래 안전과 법적 안정성,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채무자 이사회는 2025년 12월 16일 박윤영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했고, 당장 2026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소갑 제10호증 조선비즈 기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전에 박윤영이 차기 대표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표이사 피선출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에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당장 임박한 차기 대표이사 선출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채권자를 비롯한 후보자들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보호하려면 본안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강행규정인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는 조승아가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하여 남성으로만 구성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점에서 위법·무효임이 명백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 1. 소갑 제2호증 | 지원서 |
| 1. 소갑 제3호증 | 방문접수 확인증 |
| 1. 소갑 제4호증 | 사회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 1. 소갑 제5호증 | 조선일보 기사 |
| 1. 소갑 제6호증 | 이사회규정 |
| 1. 소갑 제7호증 | 노컷뉴스 기사 |
| 1. 소갑 제8호증 | KT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 |
| 1. 소갑 제9호증 | 천지일보 기사 |
| 1. 소갑 제10호증 | 조선비즈 기사 |
| 1. 소갑 제11호증의 1, 2, 3 | 각 채무자 보도자료 |
| 1. 소갑 제12호증 | 더팩트 기사 |

1. 소갑 제13호증 중앙일보 기사
1. 소갑 제14호증 이사회 구성원

2025. 12. 22.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소현
담당변호사 신인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